

2.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54號 1996. 2. 13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중 “자격증사본”을 “자격증사본(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사본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고서를 받은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2항중 “제13조 제2항”을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 제1호 단서중 “국민주택자금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국민주택자금의 증가

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4조의2 제4항중 “영 제37조 제2항 제4호”를 “영 제37조 제2항 제6호”로,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항 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9항 본문 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하며,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4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에 의해 해당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⑩시장등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및 해산인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3항 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①법 제4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제32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4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33조 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직할시도”를 “광역시도”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7조 본문, 제10조 제2항·제3항, 제11조, 제11조의3 제2항, 제11조의4 제2항·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의2 제2항, 제14조의4 제2항, 제14조의6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및 제7항, 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동항 제1호, 제21조의2, 제22조의7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본문 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
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8
조의2 제2항 본문 · 제4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 제19조의2 제5항 · 제7항
및 제22조의5 제1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4 제2항 “재무부장관”을 “재정경
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및 제14조의4 제3항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표 1의2중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
를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로, “기타 직할
시”를 “기타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및 별지 제9호서식중

“[시 장]_{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_{광역시장}”로, “서울
특별시장 · 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 ·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시 장]_{도지사}”를

“[특별시장]_{광역시장}”로 한다.
[도지사]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
식 앞쪽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
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건설
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2호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
42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
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수신란중 “건설부장관”
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 4.
주택복권자금조성내역의 ②경기란 내지
⑨제주란을 각각 ⑩경기란 내지 ⑪제주란
으로 하고, ⑩인천란 다음에 ⑫대전란과
⑬광주란을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용적율”을 “용적률”
로,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로 하고, “국토이용관리
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용적율”을 “용적률”
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중 “시장 · 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로, 동서식 뒤쪽중 “시
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중 “[시 장]_{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_{광역시장}”로 한
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란중 “건설부장
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
2. 작성요령 1중 “게재함”을 “기재함”으

로 한다.

부 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5서

식 앞쪽중 “[시장]”를 각각 “[군수]” 으

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4서식 및 별지 제42호의7서

식 앞쪽중 “[시장]”를 각각 “[군수]” 으

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이유◇

재건축안전진단기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진단기관과 일치시키고 안전진단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국민주택규모를 지역에 관계없이 85제곱미터이하로 하던 것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로 확대함(제17조 제3항).
 - 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범위를 국민주택자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자금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때로 함(제21조 제1항 제1호).
 - 다. 재건축안전진단기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함(제32조의2 제1항).
 - 라. 재건축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안전진단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제32조의2 제3항). <건설교통부 제공>